



예금거래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이하 "카카오뱅크"라 한다)와 고객이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이 약관을 인터넷홈페이지 및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이하 "모바일앱"이라 한다)에 게시하고, 고객은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 예금 및 적립식 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제 2 조 실명거래

- ① 고객은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 ② 카카오뱅크는 고객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 조 거래방법

고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실사용자로 등록된 법인명의 스마트폰 포함)에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하여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카카오뱅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센터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 "전자적 장치")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 4 조 전자서명, 비밀번호 등의 신고

- ① 고객은 거래를 시작할 때 전자서명, 비밀번호,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가 따로 정하는 예금은 계좌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 조 입금

- ① 고객은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자기앞수표로 계좌송금(고객이 모바일앱 이외에서 자기 계좌에 입금하거나, 제 3 자가 모바일앱이나 다른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여 고객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고객 계좌에 입금하는 것) 할 수 있다.
- ② 자기앞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카카오뱅크는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 6 조 예금이 되는 시기

- ① 예금이 되는 시기는 제 5 조에 따라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을 기록한 때이다.
- ② 카카오뱅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1 항의 확인 또는 기록처리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자기앞수표의 부도

카카오뱅크는 제 6 조 제 1 항에 따라 입금된 자기앞수표가 지급 거절되었을 때에는 그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해당 은행의 부도어음 통보에 따라 그 금액을 예금원장에서 뺀 뒤 해당 은행으로 반환 처리하며, 고객(또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 이자

-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 6 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카카오뱅크가 정한 금리로 셈한다.
- ② 카카오뱅크는 예금종류별 예금금리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리를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모바일앱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1 개월 동안 게시한다.
- ③ 제 2 항에 따라 금리를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금리를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계약 당시의 금리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금리를 적용한다.
- ④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 시 금리적용 방법을 모바일앱에서 안내하며, 또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금리를 바꾼 때마다 바뀐 금리를 모바일앱에서 안내한다.

B

⑤ 고객이 실제 받는 이자는 제 1 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 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 9 조 휴면예금 및 출연

① 카카오뱅크는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나.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② 제 1 항에 따른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0 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예금을 동법 제 45 조에 따라 지급청구 할 수 있다.

제 10 조 지급, 해지청구

① 고객이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전자서명된 지급 또는 해지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자동이체 또는 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1 조 지급시기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고객이 요청할 때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고객이 요청할 때 지급한다.

제 12 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① 카카오뱅크는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고객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② 제 1 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제 1 항의 지급정지기간은 지급 정지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정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카카오뱅크는 10 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카카오뱅크가 제 1 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객에게 지급정지 사실과 이의신청 절차를 유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며, 고객이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카카오뱅크가 정한 민원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고객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⑥ 카카오뱅크는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해지하여야 한다.

⑦ 카카오뱅크는 고객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된 경우 사고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 1 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 조 양도 및 질권설정

① 고객이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면 사전에 카카오뱅크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 14 조 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① 고객은 모바일앱을 설치한 스마트폰 또는 카드 등을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에는 곧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전자서명, 비밀번호, 성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신고는 카카오뱅크가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 해제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의 신고를 철회한 때는 고객 본인이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B

제 15 조 모바일앱 재등록, 카드의 재발급 등

제 14 조에 따라 모바일앱을 설치한 스마트폰 또는 카드 등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카카오뱅크는 신고인이 고객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등록하거나 재발급한다.

제 16 조 통지방법 및 효력

- ① 카카오뱅크는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고객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카카오뱅크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고객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고객에게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② 카카오뱅크가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③ 카카오뱅크는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고객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고객이 제 14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 조 면책

- ① 카카오뱅크는 모바일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고객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청구서, 신고서, 위임장 등을 제출받는 경우 해당 서류에 찍힌 인감 또는 서명이 인감증명서에 따른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따른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그 외 비밀번호 등 본인확인을 위하여 입력 또는 제출받은 정보가 사전 신고된 고객의 정보와 동일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카카오뱅크가 고객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모바일앱 및 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카카오뱅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전자서명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고객에 손해가 생겨도 카카오뱅크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카카오뱅크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한 계좌는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고객에 손해가 생겨도 카카오뱅크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고객이 제 14 조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카카오뱅크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카카오뱅크는 고객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 18 조 수수료

- ① 고객이 전자적 장치 또는 다른 금융기관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카카오뱅크는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② 카카오뱅크는 제 1 항의 경우 외에도 고객이 제신고, 부가서비스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 1 항, 제 2 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19 조 오류처리 등

- ① 카카오뱅크가 예금실장이나 계좌 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고객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카카오뱅크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20 조 예금의 비밀보장

- ① 카카오뱅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전자적 장치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고객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1 조 약관의 변경

- ① 카카오뱅크는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 개월 전에 한달간 모바일앱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B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고객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 알린다.
 - 1. 제 1 항에 의한 게시
 - 2. 고객이 신고한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전화(SMS,MMS,메신저 등)의한 통지
 - 3. 모바일앱 초기화면에 게시
- ③ 고객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모바일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고객의 이의가 카카오뱅크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22 조 약관적용의 순서

- ① 카카오뱅크와 고객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 23 조 기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한다.

제 24 조 이의제기

고객은 카카오뱅크와의 거래와 관련 하여 이의가 있을 때 카카오뱅크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5 조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 가입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 이후 가입고객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B

변경 전·후 대비표 (예금거래기본약관)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 1 조~ 제 24 조 (생략)	<p>제 1 조~ 제 24 조 (현행과 같음)</p> <p>제 25 조 위법계약의 해지</p> <p>고객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p> <p>부 칙</p> <p>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 가입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 이후 가입고객에 한하여 적용합니다.</p>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반영 시행 관련 부칙 신설